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1. . . (제 회)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황 식 (국무총리)
제출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629호, 2011. 5.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기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안 제4조)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부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함.

나. 지식재산 사업의 성과분석(안 제12조)

- 1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작성된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행정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따른 관련 민간 기관·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함.

다.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운용에 관한 심의(안 제13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과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설치(안 제14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의 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시책의 구체화(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국가지식재산 분류표 작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시책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 5. 25. ~ 6.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단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법무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식재산 창출 전문위원회
2.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
3. 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

5. 국방부

6. 행정안전부

7. 문화체육관광부

8. 농림수산업부

9. 지식경제부

10. 보건복지부

11. 환경부

12. 국토해양부

13. 국가정보원

14. 국무총리실

15. 방송통신위원회

1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7. 공정거래위원회

18. 관세청

19. 문화재청

20. 중소기업청

21. 특허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및 제21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 지식재산 기반 전문위원회

5. 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해당 분야의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외에 한시적인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구성·운영 및 제14조에 따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①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개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출한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점검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 및 개선의견을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3월 15일까지

④ 제3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⑥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2.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주관 기관 또는 관계 기관
3.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15일까지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행계획에 포함된 단위사업의 시행시기
2. 단위사업의 주관 기관 또는 관계 기관
3.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 시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이하 “재원배분방향등”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사업(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의 조성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② 위원회는 지식재산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교육·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시행계획서(계획 및 실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심의) ① 위원회는 재원배분방향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서

2.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 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 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
3.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 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4. 그 밖에 재원배분방향등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가 재원배분방향등을 심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 하여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 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 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일반직공무원으 로 보할 수 있다.

③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조정
4.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사·연구의 발굴·추진 및 사업의 지원
5.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6.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시 하는 사항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2. 시·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지식재산 관련 사업 평가
3.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

제16조(법령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또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는 때
2.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 또는 변경하기 30일

전. 다만, 법령에서 해당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주요 정책 및 계획 의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그 내용이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계획에 관련될 때에는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 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국무총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 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관련 동향
2.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제18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공 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들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 관 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공정한 분배·이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공동연구개발의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들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와 연구개발 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창출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자 보상에 대한 교육·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창출자 보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정보·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 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수사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현황 조사
2.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지원
3. 외국 정보·수사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구
4. 지식재산 관련 정보망 해킹 등에 대한 보안대책 지원
5. 외국의 지식재산 제도·정책 현황 등의 조사·연구 지원

6.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소관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의 표준화 사업
2. 지식재산의 표준화를 연계한 연구·개발 사업
3.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기반 구축 사업
4.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22조(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3년마다 외국의 지식재산 분류 동향을 조사·분석하

고 새로운 지식재산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2. 지식재산 예측 및 가치 평가
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유통
4. 그 밖에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제23조(지식재산 경영인증 및 지원 등)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증장기 수요·공급 전망
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공급 계획
3.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 촉진
4. 지식재산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

제25조(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연구)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2. 법 제31조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3. 법 제34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조정과 관련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은 2012년부터 시작되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중 “7월 31일까지”를 “9월 30일까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10월 15일까지”를 “11월 30일까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식재산권 보호)”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사용·대부·매각에 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사용·대부·매각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④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⑧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지적재산”을 “지식재산”으로 한다.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⑩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6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⑪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단체)”를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라목 중 “지적재산권거래”를 “지식재산권거래”로 한다.

⑬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 시책)”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6호까지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⑭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을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총리실 지식재산기반팀	
연 락 처	(02) 734 - 0361